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663

발의연월일: 2024. 7. 12.

발 의 자:조인철·고민정·박균택

이개호・정준호・정진욱

민형배 • 정동영 • 신정훈

이용우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설치·조성·운 용하고 있음.

이를 통해 방송통신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인력 양성 사업·시청 자와 이용자의 피해구제 및 권익증진 사업을 포함하여 콘텐츠 제작과 유통에 관한 지원 및 소외계층의 방송통신 접근 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 과정에서 OTT(Over The Top) 등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들도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직·간접적인 수혜자가 된다고 보임. 하지만 현행법에서 이 집단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징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서 다른 사업자들 사이에서 형평성 이슈가 제기될 수 있음.

실제로 EU와 캐나다 등 해외 국가에서는 기존 방송통신 사업자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게도 방송통신발전 기금 조성 분담금 납부를 의무화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의 신고를 한 자로서 이용자 수 또는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도 기금 조성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주요 OTT 사업자 등 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영리행위를 하고 있는 새로운 유형의사업자들도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재원을 분담하도록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하고자 함. 또한,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용도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보편적 역무에 대하여 장애인ㆍ저소득층 등의 요금감면 지원을 하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5조제5항 및 제26조제1항제10호의2 신설).

법률 제 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3호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제8항"을 "제9항"으로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의 신고를 한 자로서 이용자 수 또는 트래픽 양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전년도 해당부가통신사업에 따른 매출액에 그 100분의 1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징수율을 곱하여 산정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25조의2제1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보편적 역무에 대한 장애인·저소득층 등의 요금감면 지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제25조(기금의 조성) ①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	
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2항부터 <u>제4항</u> 까지의 규정	3 <u>제5항</u>
에 따른 분담금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1
	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의 신
	고를 한 자로서 이용자 수 또
	는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로부터 전년도 해당 부가통신
	사업에 따른 매출액에 그 100
	분의 1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
	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는 징수율을 곱하여 산정한 분
	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u>⑤</u> · <u>⑥</u> (생 략)	$\underline{ 6} \cdot \underline{ 7}$ (현행 제5항 및 제6항
	과 같음)
<u>⑦</u>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u>8</u>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담 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 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⑧ (생략)
- ⑨ 제2항부터 <u>제8항</u>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담금의 산정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2(분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2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분담금을 부과받은 자가 부과된 분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수 있다.

- ② (생략)
- ③ 제25조제2항부터 <u>제5항</u>까지 에 따른 분담금 부과에 이의가

제5항
<u>⑨</u> (현행 제8항과 같음)
<u>⑩</u> <u>제9항</u>
 제25조의2(분담금에 대한 이의신
청) ①제6항
· ② (현행과 같음)
③ <u>제6항</u>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이의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 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 다.

제2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된다.

1. ~ 10. (생 략) <u><신 설></u>

11. ~ 16. (생 략) ② ~ ④ (생 략)

제26조(기금의 용도) ①
1. ~ 10. (현행과 같음)
10의2. 「전기통신사업법」 제2
조제10호에 따른 보편적 역
무에 대한 장애인ㆍ저소득층
등의 요금감면 지원
11. ~ 16.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